

보도자료

2019. 3. 26.



양형위원회

담당부서

운영지원단

담당자

운영지원단장 이도행 판사
(☎ 3480-1924)

양형위원회 제93차 전체회의 결과

- 『명예훼손범죄,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,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』 의결

- 양형위원회(위원장 정성진)는 2019. 3. 25. 제9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『명예훼손범죄,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,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』을 의결하였음 ⇨ 새로이 설정된 양형기준은 2019. 7. 1. 시행 예정
-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중 그동안 설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명예훼손범죄,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,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를 양형기준 신규설정대상 범죄로 선정 ⇨ 2018. 4.~ 12. 양형자료조사, 전문위원회의(6회), 양형위원회의(5회) ⇨ 2019. 1. 15. 양형기준안을 확정 ⇨ 2019. 2. 11.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⇨ 2019. 3. 25. 양형기준 최종의결
-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은 인터넷, SNS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범죄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것임
-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은 불법 다단계 유사금융업체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적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고자 한 것임
-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은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통장매매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위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한 것임

○ 의결된 양형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

○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

-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지 않고, 법학계와 국회 등에서 비범죄화 논의가 있어 양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, 비난가능성이 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함
- 모욕의 경우에도 인터넷, SNS를 통한 모욕행위 등 범행 방법과 내용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엄정한 양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양형기준을 설정함
- 2017. 7. 7.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한 군사법원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최초로 군사범죄(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와 상관모욕죄)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함
-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전과가능성이 높아 피해가 크고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명예훼손에 비하여 가중처벌(최대 3년9월까지 권고¹⁾)하고,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과 상관모욕도 가중처벌

○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양형기준

- 조직적·전문적인 유사수신행위의 경우 피해가 크고 실제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조직적 범행 여부에 따라 유형을 분류
- 조직적 범행의 경우 가중영역 상한을 징역 4년으로 설정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사안에서는 특별조정²⁾으로 법정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권고(사기죄 등이 병합될 경우 추가로 형량이 상향됨)
-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는 가중처벌함

○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

- 영업적·조직적·범죄이용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자금융 접근매체 양도양수의 경우 이를 매개로 보이스피싱 사기 등 후속범행이 이루어져 다수 시민의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특히 크므로, 영업적·조직적·범죄이용목적 범행 여부에 따라 유형을 분류
- 영업적·조직적·범죄이용목적 범행의 경우 가중영역 상한을 징역 2년6월로 설정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사안에서는 특별조정³⁾으로 법정최고형인

징역 3년까지 권고(사기죄 등이 병합될 경우 추가로 형량이 상향됨)

- 통장매매가 다량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중처벌함

○ 향후일정

○ 2019. 4. 관보 게재

○ 명예훼손범죄,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,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:
2019. 7. 1.부터 시행

○ 2019. 4. 27. 제7기 양형위원회 출범

- 1)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는 **형량범위 특별조정**으로 **가중영역 상한의 1/2까지 가중**[출판물등·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유형의 가중영역 상한이 2년6월이므로, 1년3월(=2년6월× 1/2)을 추가로 가중하여 **징역 3년9월까지 권고**]
- 2)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는 **형량범위 특별조정**으로 **가중영역 상한의 1/2까지 가중**[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조직적 범행 유형의 가중영역 상한이 4년이므로, 2년(=4년× 1/2)을 추가로 가중하여 징역 6년까지 권고될 수 있으나, 법정형의 상한이 징역 5년이라 **징역 5년까지 권고**]
- 3)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는 **형량범위 특별조정**으로 **가중영역 상한의 1/2까지 가중**[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영업적·조직적·범죄이용목적 범행의 가중영역 상한이 2년6월이므로, 1년3월(=2년6월× 1/2)을 추가로 가중하여 징역 3년9월까지 권고될 수 있으나, 법정형의 상한이 징역 3년이라 **징역 3년까지 권고**]

I.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 주요 내용

① 양형기준 설정 주요 대상범죄

죄명	적용법조	구성요건	법정형	
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	§307 ②	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	5년↓ 징역, 10년↓ 자격정지, 1,000만 원↓ 벌금	
사자명예훼손	§308	공연히 허위사실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	2년↓ 징역 또는 금고, 500만 원↓ 벌금	
상관명예훼손 (허위사실적시)	군§64 ④	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	5년↓ 징역 또는 금고	
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	§309 ②	비방할 목적으로 신문,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§307 ② 죄	7년↓ 징역, 10년↓ 자격정지, 1,500만 원↓ 벌금	
정보통신망이용 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	정통법 §70 ②	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	7년↓ 징역, 10년↓ 자격정지, 5,000만 원↓ 벌금	
모욕	§311	공연히 사람을 모욕	1년↓ 징역 또는 금고, 200만 원↓ 벌금	
상관모욕	군§64	①	상관을 면전에서 모욕	2년↓ 징역
		②	문서,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	3년↓징역

② 범죄 유형 및 형량 범위

1.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

유형	구 분	감경	기본	가중
1	일반 명예훼손	-6월	4월-1년	6월-1년6월
2	출판물등·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	-8월	6월-1년4월	8월-2년6월

2. 모욕

유형	구 분	감경	기본	가중
1	일반 모욕	-4월	2월-8월	4월-1년
2	상관모욕	-6월	4월-10월	6월-1년2월

③ 주요 특징

-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징역형 선고비율이 낮아 양형기준 설정의 요청이 실무상 그리 높다고 볼 수 없는 반면,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비범죄화의 요구가 높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지 않음
- 인터넷, SNS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범죄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
- 2017. 7.부터 군사법원에도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있고, 군형법상 범죄(순정군사범죄)에 대해서도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함. ⇨ 이번에 최초로 군사범죄(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와 상관모욕죄)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함
-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전파가능성이 높고,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명예훼손에 비하여 가중처벌하고,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과 상관모욕도 가중처벌
- ◆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
 - ①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②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, ③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, ④ 군형법상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⑤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, ⑥ 동종누범 :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
 - ①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, ②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, ③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, ④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, ⑤ 처벌불원 등 :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여 형을 감경
- ◆ 모욕
 - ①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②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, ③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, ④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, ⑤ 동종누범 :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
 - ①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, ②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, ③ 처벌불원 등 :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여 형을 감경

II. 유사수신행위범위반범죄 양형기준 주요 내용

① 양형기준 설정 주요 대상범죄

-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 :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,000만 원 이하의 벌금

② 범죄 유형 및 형량 범위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비조직적 범행	- 8월	4월 - 1년	8월 - 2년
2	조직적 범행	- 10월	6월 - 1년 6월	1년 - 4년

③ 주요 특징

- 유사금융업체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유사수신행위범위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
- 비조직적 범행과 조직적 범행을 구분하여 후자를 가중처벌
- 조직적 범행의 경우 가중영역 상한을 징역 4년으로 설정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사안에서는 특별가중으로 법정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선고가능(사기죄 등이 병합될 경우 추가로 형량이 상향됨)
- ① 조직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, ②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, ③ 동종 누범, ④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: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
- ①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, ② 단순가담, ③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등 :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여 형을 감경

III.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주요 내용

① 양형기준 설정 주요 대상범죄

- 전자금융거래법위반 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

적용법조	구성요건	법정형
제49조 제4항	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	3년↓ 징역 또는 2천만 원↓ 벌금 (병과 가능)
	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·전달·유통한 자	
	제3호 제6조 제3항 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	
	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	

② 범죄 유형 및 형량 범위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일반적 범행	- 6월	4월 - 10월	6월 - 1년 2월
2	영업적·조직적·범죄이용목적 범행	- 8월	6월 - 1년 6월	10월 - 2년6월

③ 주요 특징

-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통장매매행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
- 일반적 범행과 영업적·조직적·범죄이용목적 범행을 구분하여 후자를 가중처벌
- 영업적·조직적·범죄이용목적 범행의 경우 가중영역 상한을 징역 2년6월로 설정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사안에서는 특별가중으로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선고가능(사기죄 등이 병합될 경우 추가로 형량이 상향됨)
- ① 조직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, ②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, ③ 동종 누범, ④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: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
- ①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, ② 단순가담, ③ 자발적 거래정지·분실신고 등으로 후속범죄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등 :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여 형을 감경